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628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정순기, 고성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 ‘청년친화도시’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 청년들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(안 제3조 및 제4조)
-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 및 제6조)
-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- 정책연구 및 비용 등 지원(안 제8조 및 제9조)
-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, 교육 및 홍보(안 제10조 및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 6
- 2)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8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- 2) 입법예고: 2024. 11. 15. ~ 2024. 11. 21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.
2. “청년친화도시”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·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.
3. “청년정책”이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, 권익증진,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청년

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2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.
3. 교육, 고용,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.
4.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.

1.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
2.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

3.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

4.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

5.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
2.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
4.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

5.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

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8조(정책연구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비용 등 지원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「청년기본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3. 21.]

## □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

[시행 2023. 9. 22.] [대통령령 제33720호, 2023. 9. 12., 일부개정]

제21조의8(청년친화도시의 지정)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(이하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
2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청년참여, 청년발전,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
4.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
  -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
  - 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
  - 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
- 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-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12.]